##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78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김성주·강선우·고영인

김회재 · 남인순 · 송영길

송옥주·정필모·최종윤

허종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,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의료비 내역 등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,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르는 경우 또는 알더라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.

이에 심신미약·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일반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,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

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·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담당 공무원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직권 신청하고자 할 때 대상자가 심신미약·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13조제4항).
- 나. 암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·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6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암환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암환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 건소의 업무 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 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	제13조(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
업 등) ① ~ ③ (생 략)	업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암환자
	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암
	환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
	다. 이 경우 보건소의 업무 담
	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
	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
	<u>여야 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
	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
	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
	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
	<u>수 있다.</u>
⑤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	<u> </u>
의 대상·기준·방법, 제3항에	
따른 대리 신청 및 <u>제4항</u> 에 따	<u>제5항</u>
른 동의의 방법・절차 등 의료	
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